



국립전파연구원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2023.1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FAQ



국립전파연구원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KC 전파인증 알아보기!



관련 규정 : 전파법 제58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① KC전파인증이 무엇인가요?

KC전파인증은 공식 용어로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라 합니다.
전파 혼·간섭 방지 및 전자파로부터 기기와 인체보호 등을 위해서 방송통신
기자재등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기기임을 인증(혹은 등록)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② KC전파인증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KC전파인증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제품을 유통 또는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③ KC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을 알고 싶어요!

KC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은 **전파 혼·간섭 및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 무선기기, 유선기기,
전기기기, 전동기기, 조명기기, 정보기기 등이 있습니다.





KC 전파인증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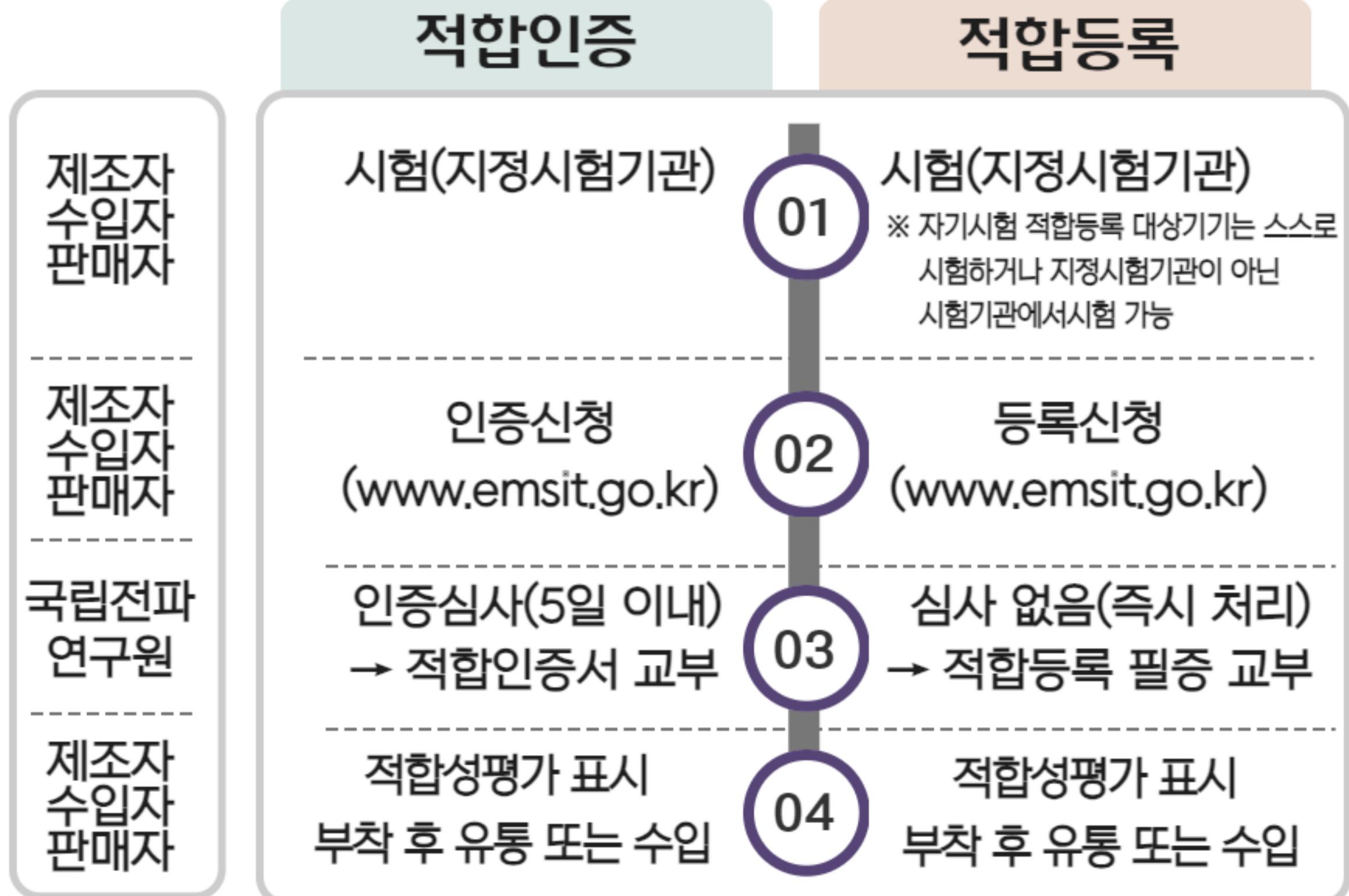


관련 규정 : 전파법 제58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① KC전파인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① 대부분의 무선기기가 받아야 하는 **적합인증**
- ② 전자파 영향을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일부 무선기기 등이 받아야 하는 **적합등록**
- ③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잠정인증**이 있습니다.

② KC전파인증의 절차를 알려주세요!





KC 전파인증 알아보기!



관련 규정 : 전파법 제58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① KC전파인증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적합인증(혹은 적합등록)을 받은 이후에는 **제품과 포장에 ① KC마크 ② 인증번호(등록번호) ③ 적합성평가 정보**(상호명, 기자재명칭, 모델명, 제조 시기 정보, 제조사, 제조국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KC전파인증 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은 출고 전에, 수입 제품은 통관 전에 하여야 합니다.

② KC전파인증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KC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전파법 제84조)

KC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전파법 제86조)

KC 전파인증 대상 기자재 안내



적합인증

○ 무선설비기기(142종)

ex) 해상업무용 무선기기, 항공업무용 무선기기, 간이무선국용 무선기기,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등

○ 유선 방송통신기기(2종)

ex) I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디지털 CATV 셋톱박스 등),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 단말장치(PTV 셋톱박스 등)

적합등록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 무선설비기기(25종)

·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RFID 무선기기(433MHz 및 13.56MHz 주파수 대역) 등

○ 유선 방송통신기기(42종)

· 전화기, 팩시밀리 기기,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홈오토메이션, 비디어도어폰 등), 모뎀,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IP카메라, 폐쇄회로 TV 등)

○ 전자파영향을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130종)

· 산업·과학·의료용 고주파이용 기기류 · 자동차 장착용 디지털 기기류

·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전기청소기, 전기다리미, 전기프레스기, 전기식기세척기, 전기식기건조기, 전기레인지, 전기토스터, 전기세탁기, 탈수기, 고데기, 전기온장고, 믹서기, 전기녹즙기, 반죽기, 전기밥솥, 커피메이커, 전기담요, 전기침대, 전기찜질기, 발 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온수기, 제빙기, 전자레인지, 가정용 전동재봉기, 전기충전기, 전기건조기, 전기온풍기, 전기난방기, 전기마사지기, 냉방기, 제습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공기청정기, 자동판매기, 팬, 레인지후드, 비데, 가습기, 음식물처리기, 손톱정리기, 전기면도기,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전기온수매트, 전동칫솔, 해충퇴치기, 전기포총기, 전기집진기, 착유기, 수하물보관기, 게임기구, 전동형 퀄스크린, 전기훈증기, 보풀제거기, 산소이온발생기, 전기정수기, 초음파세척기, 전동드릴 등 전동공구, 전동스쿠터, 전기장난감, 전기헬스기구 등

· 조명기기류

LED 등기구, 형광등기구, 전기스탠드, 자기식안정기, 전자식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등

· 멀티미디어 기기류

비디오카메라, 앰프, 앰프내장형 스피커, 오디오시스템, 전자악기, 비디오게임기구, 비디오픈, 전자시계, 컴퓨터류, 컴퓨터 주변기기류(모니터, 복사기, 프린터, 스캐너, 키보드, 외장형 저장장치 등),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보드류, 저장장치류, 전원공급기, 직류전원장치 등), 사무기기류(코팅기, 어학실습기, 전자칠판 및 보드 등), 디지털 장치류 등

자기시험 적합등록

○ 유선 방송통신기기(15종)

· 가입자보호기(전화용), 방송 공동수신설비 기기(동축케이블, 광분배기, 가입자보호기, 광케이블)

○ 전자파영향을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42종)

· 전기 및 전동기기류

필름접착기, 관상어용·식물용·동물부화용·동물사육용 히터, 전기어항, 기포발생기기, 전격살충기, 전기분무기, 전기소독기, 포장기기, 전기시계, 전기분수기,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전기작동 도어록

·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전원으로 동작하는 전기·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디지털기기류

KC전파인증 대상제품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적합성평가 제도

Contents

1. 적합성평가 대상

1-1. 적합성평가가 제외되는 기자재들을 알려주세요!	1
1-2.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제품은 적합성평가 대상인가요?	2
1-3.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등에서 사용되는 CF, SD카드는 적합성평가 대상인가요?	2
1-4. 라이트닝 케이블은 적합성평가 대상인가요?	2
1-5. 시거잭 전원 작동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인가요?	3
1-6. 다른 회사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아 수입하여 판매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병행 수입할 때 병행 수입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3
1-7.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단순 조합한 완제품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4
1-8. 국내 기술기준이 없는 제품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
1-9. 6개월 전에 태블릿 1대를 해외에서 직구하였습니다. 해당 태블릿을 중고거래로 판매하려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4

2. 적합성평가 면제

- | | |
|--|---|
| 2-1. 시험,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 5 |
| 2-2. 국내 시장조사를 위반 견본품용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 5 |
| 2-3.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 적합성평가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 5 |
| 2-4.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각 1대씩 총 2대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한가요? | 5 |
| 2-5. 법인이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태블릿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한가요? | 6 |
| 2-6. 수입 방송통신기자재의 면제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 6 |
| 2-7.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KS인증을 받은 제품은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나요? | 7 |
| 2-8.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으로만 조립한 컴퓨터는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나요? | 7 |
| 2-9. 산업용 기자재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납품업체(제조 또는 생산공장)와 납품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용 기자재로 적합성평가 면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 7 |
| 2-10. 제조 또는 생산공장(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 등)에 설치된 산업용 기자재의 유지보수
용도로 기자재의 구성품(또는 부품)을 납품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면제신청이 가능한가요? | 8 |
| 2-11. 무선기기도 산업용 기자재로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 8 |
| 2-12. 제조 공장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나 컴퓨터 등도
산업용 기자재로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 8 |

3. 적합성평가 변경

3-1.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회로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9
회로가 변경된 제품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3-2.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제품에 새로운 무선기능이 추가될 때	10
변경신고가 가능한가요?	
3-3. 부품 등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험할 필요없이 변경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11
3-4. 제품 외형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11
3-5.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무선 송·수신용 부품으로 대체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도 시험을 다시 한 후에 변경신고 해야 하나요?	12
3-6. 기자재의 전기적인 회로·구조·기능은 동일하지만, 기자재 케이스의 색상만 다른 경우에도 파생모델을 등록해야 하나요?	12



FAQ

적합성평가 제도

Contents

4. 적합성평가 표시

4-1. 적합성평가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3
4-2. KC마크 기본도안 파일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13
4-3. 적합성평가 표시는 언제 하여야 하나요?	13
4-4. 해외 제조사 등의 사정으로 통관 전에 제품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
4-5. 제품 크기나 디자인상 이유로 적합성평가 정보를 표시하기 어렵습니다. 표시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4
4-6. 제품 사용설명서에는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14
4-7. KC마크의 색채번호가 고시와 다르게 사용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15
4-8.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제조국가가 다수국가인 경우에는 제조국가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



FAQ

적합성평가 제도

Contents

5. 적합성평가 절차

5-1. 적합인증 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16
5-2. 적합등록 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17
5-3. 적합등록을 완료한 후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18
5-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혹은 적합등록 필증)의 재발급 절차를 알려주세요!	18
5-5. 전기용품에 대하여 적합성평가 외에 전기안전인증(확인)도 국립전파연구원에 신청하여 인증받을 수 있나요?	19
5-6. 2012.7.1. 이전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하드웨어 변경이 있다면 적합성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19
5-7.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 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19
5-8. 적합성평가를 받은 수입 방송통신기자재의 통관절차가 궁금해요!	20
5-9.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통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
5-10. 적합인증(혹은 적합등록)를 받은 무선 송·수선용 부품을 사용한 완제품의 적합성평가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21
5-1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혹은 적합등록 필증)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1
5-12. 전자민원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를 꼭 해야 하나요?	22
5-13. 파생모델이 있는 제품의 경우, 파생모델을 묶어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22
5-14.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의 내장구성품을 적합등록하려고 합니다. 추가 시험없이 적합등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2

FAQ

적합성평가 제도

Contents

6.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

- | | |
|---|----|
| 6-1. 외국의 인증(CE, FCC 인증 등)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나요? | 23 |
| 6-2. MRA, FTA 관련 외국에 지정한 시험기관 현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23 |
| 6-3. 한-EU FTA협정에 따라 "EU 시험기관 인증서를 보유한 제품을 국내 수입시 EU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국내 KC 인증이 가능한가요? | 24 |
| 6-4. MRA 상대국 지정기관(예시: FCC, IC 등)의 표준화된 기술기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 24 |

7. 기타

- | | |
|---|----|
| 7-1.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 25 |
| 7-2. 적합성평가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25 |
| 7-3.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26 |
| 7-4. 적합성평가 기준 부적합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제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26 |
| 7-5.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법령, 고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 27 |
| 7-6.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28 |
| 7-7. 적합성평가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 28 |
| 7-8. 자기시험 적합등록 기자재의 시험성적서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28 |

I. 적합성평가 대상

1-1

적합성평가가 제외되는 기자재들을 알려주세요!

적합성평가가 제외되는 기자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정격입력이 10kW를 초과하는 기자재
2.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멀티미디어기기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
3. 디지털장치류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 가.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 나.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TV리모컨 등)
 - 다. 카메라 렌즈
 - 라.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포함)
4.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 디지털장치류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 가.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
 - 나.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 다.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
 - 라.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 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어린이용 장난감)
 - 마. 단순 조명기능(단순 On/Off 및 점멸기능, 조명 밝기·색의 단순 조절 기능을 포함)만을 갖는 기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
 - 바. 손소독기 등 전기분무기
5. 멀티미디어기기류 또는 전원공급장치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승압케이블, 별도의 전원이 없이 1대 1로 접속되는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
6. 전기용접기류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정격입력이 10kVA를 초과하는 기자재
7. 직류전원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크리스마스트리용 조명기구, 충전식 휴대전등, 조광기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별표 1] 제11호 ※ 비고 및 [별표 1] 제11호 라. 조명기기류 4) 기타 조명기구

I. 적합성평가 대상

1-2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제품은 적합성평가 대상인가요?

블루투스(Bluetooth) 기능이 있는 제품은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적합인증 대상입니다. 다만, 전자파흡수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별표 1] 제5호

1-3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등에서 사용되는 CF, SD카드는 적합성 평가 대상인가요?

디지털기기의 메모리 확장을 위해 사용되는 CF, SD카드는 내부에 능동회로 또는 디지털장치 조건 등에 만족하지 않아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카드리더기, USB 메모리카드, 외장형 저장장치 등은 디지털장치 또는 컴퓨터 주변기기에 해당하므로 적합성평가 대상입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별표 1] 제11호

1-4

라이트닝 케이블은 적합성평가 대상인가요?

별도의 전원없이 1대 1로 접속되는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는 적합성평가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라이트닝 케이블은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별도의 전원없이 1대 다(2 이상)로 접속되는 케이블의 경우에도 2개 이상 단자에서 동시에 데이터 전송 등의 정보처리 기능이 불가능하다면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 충전만 가능한 1대 3 케이블)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별표 1] 제11호

I. 적합성평가 대상

1-5

시거잭 전원 작동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인가요?

시거잭은 승압케이블에 준하는 기자재로 판단하여 적합성평가가 제외되나, 시거잭을 전원으로 작동하는 기자재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의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에 해당된다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여부 예시]

- 시거잭 전원 '공기주입기' → 비대상(공기주입기는 적합성평가 비대상)
- 시거잭 전원 '선풍기' → 대상(선풍기는 적합성평가 대상)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별표 1] 제11호

1-6

다른 회사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아 수입하여 판매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병행 수입하려는 업체도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아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표시를 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기자재를 수입·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아닌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품의 동일성 검증, 사후관리 책임 등의 사유로 수입자마다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파법령 및 고시에서 병행수입을 정의하거나 병행 수입자에 대해 별도 규정한 바 없으나, 병행수입하는 기자재가 다른 회사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아 수입·판매중인 기자재와 동일하더라도 병행수입 업체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수입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20조제3항

【관련 참고】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적합성평가지식공유 DB – RRA KSDB(S) 제5호

I. 적합성평가 대상

1-7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단순 조합한 완제품도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들을 단순 조합한 완제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PCB 기판 등의 전자회로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완제품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참고】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적합성평가지식공유 DB – RRA KSDB(S) 제17호

1-8

국내 기술기준이 없는 제품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국내 기술기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 잠정인증 제도를 이용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잠정인증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적합성평가를 말합니다.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90일)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 전파법 제58조의2제7항 및 제8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6제4항,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제11조부터 제14조

1-9

6개월 전에 태블릿 1대를 해외에서 직구하였습니다. 해당 태블릿을 중고거래로 판매하려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개인사용 목적으로 반입한 기자재는 모델별 1대에 한하여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며, 반입(수입 신고 수리일)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자재는 판매 전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 전파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 [별표 6의2]

2. 적합성평가 면제

2-1

시험,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검사,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0대까지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2-2

국내 시장조사를 위한 견본품용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적합성 평가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는 3대까지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2-3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 적합성 평가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2-4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각 1대씩 총 2대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한가요?

개인 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는 모델별 1대만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다른 모델이라면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2. 적합성평가 면제

2-5

법인이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태블릿을 1대 구매하는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한가요?

법인이 해외에서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를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3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1대라도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2-6

수입 방송통신기자재의 면제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②통관단일창구-③요건신청-④면제신청작성, 첨부서류(계획서 및 사유서, 인보이스(화물송장)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입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체	수입 방송통신기자재등의 면제 절차
수입자	적합성평가가 면제 대상 기자재 수입
수입자	관세청 유니패스(http://unipass.cumtoms.go.kr) → 통관단일창구 → 요건 신청
수입자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 (면제사실 증명서류, 수입물품의 품명·수량 확인이 가능한 서류 첨부)
국립전파연구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 적합/부적합 처리 → 결과 통보(1일 소요)
수입자	수입신고 후 통관

2. 적합성평가 면제

2-7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KS인증을 받은 제품은 적합성 평가가 면제되나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KS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 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모델에 한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전파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2-8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으로만 조립한 컴퓨터는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나요?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 [고시 [별표 1] 제11호 자목 35)]로 조립한 컴퓨터는 고시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제품의 표면 또는 포장에 표시한 경우에 한 해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별표 6] 소비자 안내문

이 컴퓨터는 전자파 적합성평가(인증)을 받은 내장구성품을 사용하여 조립한 것으로 완성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평가는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제18조제3호

2-9

산업용 기자재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납품업체(제조 또는 생산공장)와 납품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용 기자재로 면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면제 신청시에는 납품계약서 등 납품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할 당시에 납품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 납품업체(제조 또는 생산공장)에 납품되는 것임이 확인 가능하여야 산업용 기자재로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제18조제5호

2. 적합성평가 면제

2-10

제조 또는 생산공장(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 등)에 설치된 산업용 기자재의 유지·보수 용도로 기자재의 구성품(또는 부품)을 납품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면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제조 또는 생산공장에 설치된 산업용 기자재의 유지·보수 용도로 기자재의 구성품(혹은 부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산업용 기자재의 구성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종 납품업체가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제출하여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제18조제5호

2-11

무선기기도 산업용 기자재로 면제받을 수 있나요?

산업용 기자재가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기자재이거나 적합인증 기자재를 포함하고 있으면, 해당 무선기기에 대하여 별도의 적합성평가가 필요합니다. 산업용 기자재에 전파가 비교적 약하게 발사되는 적합등록 무선기기 또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 적합등록이 가능한 무선기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무선기기에 대해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제18조제5호

2-12

제조 공장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나 컴퓨터 등도 산업용 기자재로 면제되나요?

산업용 기자재는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이나 연구실 등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제18조제5호

【관련 참고】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전파인증 알림사항 - 12. 산업용 기자재의 적합성 평가 면제 FAQ

3.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3-1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회로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회로가 변경된 제품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회로 변경, 구성품의 추가 등 아래의 경우(①~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변경사항과 관련된 해당 적용기준만을 적용하여 시험한 후에 변경신고하면 됩니다.

- ① 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구성품의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부품소자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의 경우
- ②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 등을 구현 또는 추가함으로써 적합성평가기준의 시험항목이 변경되는 경우(다만, 컴퓨터·스마트폰·스마트 TV 등과 같이 일반 사용자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범용 정보기기는 변경사항에서 제외한다.)
- ③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사용주파수 또는 기술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신고 시 다시 적용해야 하는 적합성평가기준의 범위 예시]

- '블루투스기능을 포함한 선풍기'의 회로가 변경되는 경우(무선기능의 변경은 없음)
 - 회로 변경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만 다시 적용하여 시험한 이후에 변경신고하면 되며, 무선 기술기준(블루투스 기능)에 대해서는 다시 시험할 필요가 없음
- '페라이트 코어'라는 EMI 고주파 노이즈 차단 소자(수동소자에 해당함)가 추가되는 경우
 - 해당 소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전자파적합성기준을 다시 적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다시 시험할 필요없이 단순 변경신고만 하면 됨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제15조제1항

3.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3-2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제품에 새로운 무선기능이 추가될 때 변경신고가 가능한가요?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자재에 무선기능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변경사항에 대해 적합성 평가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에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적합등록 기자재의 경우에는 새로운 무선기능이 추가됨으로써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자재가 된다면 변경신고는 불가능하며 신규로 적합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제15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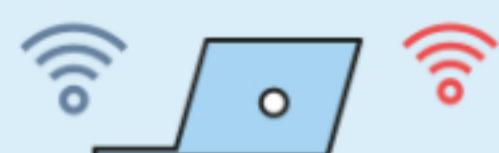
무선기능 추가시 적합성평가 변경 신고

① 적합인증 기자재



Wi-Fi 6(2.4GHz, 5GHz 주파수 대역)로 적합 인증받은 노트북(기기부호 : LARN5, LARN8)

② 무선기능 추가



Wi-Fi 6e(6GHz 주파수 대역)
무선기능 추가(기기부호 : LARN5B 추가)

변경신고 가능



적합성평가를 완료한 기자재(예시의 ①노트북)에 무선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

▷ (형식기호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신고 가능



변경 신고 불가한 경우(적합등록 기자재 + 무선기능 추가 → 적합인증 기자재)

① 적합등록 기자재



RFID용 무선기기(13.56MHz 주파수 대역)로
적합등록한 기자재(기기부호 : RFID3)

② 무선기능 추가



RFID(900MHz 주파수 대역) 무선기능 추가
(기기부호:RFID1) → 적합인증 대상

변경신고 불가

적합등록을 완료한 기자재(예시의 ①RFID용 무선기기)에 무선 기능 추가 ▷ 적합성평가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적합등록→적합인증) ▷ 변경신고 불가, 신규 적합인증 받아야 함

3.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3-3

부품 등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험할 필요없이 변경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아래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을 다시 적용하여 시험할 필요없이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 ①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 중인 기능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 ② 전자파적합성 기준(공통 적용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저항, 인덕터, 캐패시터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니가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다.)
 - 나.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치
 - 다.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을 축소
 - 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
 - 마. 컴퓨터 내장 구성품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
 - 바. 고시 [별표 1] 제11호 너목 2) 또는 3)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구성품을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하거나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추가
- ③ 무선분야 적용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을 적합성평가 받은 동등한 기능의 다른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으로 대치
 - 나.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을 제거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제15조제3항

3-4

제품 외형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단순히 제품의 외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외형변경에 따라 모델명을 추가하여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파생모델 변경)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제15조제2항

3.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3-5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무선 송·수신용 부품으로 대치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도 시험을 다시 한 후에 변경신고 해야 하나요?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기자재의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을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으로 대치하거나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무선 기술기준을 다시 적용하여 시험할 필요 없이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제15조제3항

3-6

기자재의 전기적인 회로·구조·기능은 동일하지만, 기자재 케이스의 색상만 다른 경우에도 파생모델을 등록해야 하나요?

전기적인 회로·구조·기능이 동일한 경우에는 파생모델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케이스 색상별로 모델명을 다르게 기재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생모델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4. 적합성평가 표시

4-1

적합성평가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은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적합성평가 표시]

- ①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 ② 식별부호(인증번호, 등록번호)
- ③ 적합성평가정보
(상호, 기자재명칭, 모델명,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 제조사, 제조국가)

[적합성평가 표시 예시]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별표5]

4-2

KC마크 기본도안 파일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KC마크 도안 파일은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 홈페이지의 업무안내 메뉴에서 적합성평가제도 → 적합성평가제도 개요 → 적합성평가표시 도안 클릭하시면 KC마크 도안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별표5]

4-3

적합성평가 표시는 언제 하여야 하나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은 → 출고 전에, 수입하는 제품은 → 통관 전에 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제23조제2항

4. 적합성평가 표시

4-4

해외 제조사 등의 사정으로 통관 전에 제품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입자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제품 표면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품에는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 포장에는 적합성 평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별표5]

4-5

제품 크기나 디자인상 이유로 적합성평가 정보를 표시하기 어렵습니다. 표시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적합성평가표시 중 적합성평가정보는 제품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품과 포장에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 포함)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및 식별부호는 제품과 포장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또한, 소형의 제품(단면적이 400 mm² 이하)로서 적합성평가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기본도안 또는 식별부호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별표5]

4-6

제품 사용설명서에는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국가통합인증마크(KC)와 식별부호 및 적합성평가정보는 원칙적으로 제품과 포장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품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 표시 중 적합성평가 정보(상호명, 제품명, 모델명, 제조시기 정보, 제조자, 제조국가)는 사용자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별표5]

4. 적합성평가 표시

4-7

KC마크의 색채번호가 고시와 다르게 사용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도안의 색채는 권장사항이며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권장색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나, 조사기관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정에 적합하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별표5]

4-8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제조국가가 다수국가인 경우에는 제조국가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수의 제조국가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표시를 부착하는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만 표기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별표5]

5. 적합성평가 절차

5-1

적합인증 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 ① (지정시험기관 시험) 적합인증을 신청하려면 먼저 시험설비가 구비된 지정시험기관에서 해당 제품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시험하여야 합니다.
※ 지정시험기관은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 홈페이지 '업무안내 → 지정시험기관 개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적합인증 신청) 적합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emsit.go.kr>)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신청에서 적합성평가를 선택하여 검색한 후 '05 기자재 적합성평가'의 '0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③ (첨부서류) 적합인증을 신청할 때에는 사용자설명서(한글본) 시험성적서(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외관도,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 대리인지정서(대리인 지정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④ (적합인증의 심사)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적합인증 제출 서류의 적정성,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의 적절성, 시험성적서 유효성을 심사합니다(5일 이내)
- ⑤ (적합인증서 교부)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적합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신청 화면]

01. 증밀기자재 적합인증(적합등록) 신청	02.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감정인증 신청	03.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기관 등록 신청	04.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 인증 신청
05. 기자재 적합성평가	06.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관계 확인 신청	07.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변경 신고	08.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재정신청
09. 적합성평가 폐지 신청	10. 적합성평가 민족서 자발금 신청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제2장 적합인증

5. 적합성평가 절차

5-2

적합등록 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 ① (지정시험기관 시험) 적합등록을 신청하려면 먼저 시험설비가 구비된 지정시험기관에서 해당 제품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시험하여야 합니다.
 ※ (자기시험 적합등록) 측정·검사용이나 산업·과학용 기자재, USB나 건전지(충전지) 전원으로 동작하는 전기·전동기기류 등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재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에서 시험할 수 있습니다.
- ② (적합등록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emsit.go.kr>) 홈페이지에 전자 민원신청에서 적합성평가를 선택하여 검색한 후 '05 기자재 적합성평가'의 '03 방송통신 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③ (첨부서류) 적합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대리인 지정서(대리인 지정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적합등록자 서류 비치 의무) 적합등록자는 기자재의 적합등록을 한 날부터 제조·수입·판매가 중단된 후 5년까지 적합성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 ④ (적합등록 필증 교부) 적합인증과 달리 심사절차가 없으며,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적합등록 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신청 화면]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제3장 적합등록

5. 적합성평가 절차

5-3

적합등록을 완료한 후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적합등록자가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합등록자가 비치해야 하는 서류]

- ①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 ② 대리인지정서 ③ 사용자설명서 ④ 시험성적서
- ⑤ 외관도 ⑥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⑦ 회로도(전자파적합성기준만을 적용한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 생략 가능)
- ⑧ 파생모델을 등록한 경우 그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구조 등에 관한 서류
- 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제10조

5-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혹은 적합등록 필증)의 재발급 절차를 알려주세요!

전자민원센터(<http://emsit.go.kr>)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신청에서 적합성평가를 선택하여 검색한 후 05. 기자재 적합성평가의 09.적합성평가인증서 재발급 신청에서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신청 화면]

01. 동일 기자재 적합인증(적합등록) 신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ON	무임	별급	연증
02. 방송통신기자재들의 감정인증 신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ON	무임	별급	연증
03. 방송통신기자재들의 적합 등록 신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ON	무임	별급	연증
04. 방송통신기자재들의 적합 인증 신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ON	무임	별급	연증
05. 방송통신기자재들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ON	무임	별급	연증
06. 방송통신기자재들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정 신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ON	무임	별급	연증
07. 방송통신기자재들의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지정 신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ON	무임	별급	연증
08. 적합성평가 허지 신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ON	무임	별급	연증
09. 적합성평가인증서 재발급 신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ON	무임	별급	연증

5. 적합성평가 절차

5-5

전기용품에 대하여 적합성평가 외에 전기안전인증(확인)도 국립전파연구원에 신청하여 인증받을 수 있나요?

2012.7.1. 이후에 전기용품의 전기안전과 전자파적합성(EMC) 규제가 분리되었으며, 2012.7.1. 이후에 제조된 전기용품의 전자파적합성(EMC)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전기안전인증은 국가기술표준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부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9호, 2012.3.19.>

5-6

2012.7.1. 이전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하드웨어 변경이 있다면 적합성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2012.7.1 이전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라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2012.7.1 이후에 해당 제품의 하드웨어 변경이 있다면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부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9호, 2012.3.19.>

5-7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 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 제품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전기생활용품안전법」과 「전파법」은 각각 그 규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상 안전인증 등의 대상이 아닌 전기제품이라 하더라도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부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9호, 2012.3.19.>

5. 적합성평가 절차

5-8

적합성평가를 받은 수입 방송통신기자재의 통관절차가 궁금해요!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하려면 관세청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요건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 방송통신기자재의 통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 방송통신기자재의 통관절차]

주체	수입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통관 절차
수입자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수입
수입자	관세청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 → 통관단일창구 → 요건 신청
수입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 신청 (인증번호/등록번호 기재)
국립전파연구원	적합/부적합 처리 → 결과 통보(승인번호 발급) (즉시처리)
수입자	수입신고 후 통관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제 28조

5-9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통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수입자의 보관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전통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통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관 시점에 국립전파연구원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사전통관 시험접수를 하면 시험접수번호가 발급되며 관세청 유니패스(<http://portal.customs.go.kr>)에서 방송통신기자재 사전통관 신청서 작성 후 승인처리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관 후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제28조

5. 적합성평가 절차

5-10

적합인증(혹은 적합등록)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사용한 완제품의 적합성평가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적합인증(혹은 적합등록)을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장착한 기자재의 경우,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적합성평가 당시 적용된 시험항목의 시험성적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적합성평가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파적합성기준 및 전자파흡수율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제20조

5-1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혹은 적합등록 필증)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적합성평가 인증서 진위여부 확인은 전자민원센터(<http://emsit.go.kr>) 홈페이지에 전자민원 발급에서 발급문서 진위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발급민원 진위확인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Civil Service Issue' section of the e-government portal. In the center, there is a blue header bar with the text '발급민원 진위확인' and a sub-instruc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공하는 온라인 발급민원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Below this, there is a navigation menu with items like '전자민원발급', 'Civil Service Issue', '발급민원 진위확인', and '문서위변조 방지요소'. A red box highlights the '문서위변조 방지요소' section, which contains a 16-digit alphanumeric string. At the bottom right of the highlighted area, there is a note: '• 발급문서 진위확인 서비스는 홈페이지로 발급민원 문서를 수령한 기관마다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발급문서 소지기관은 문서를 조회할 수 있으나, 발급기관은 접속 단초 90일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 전자문서 확인번호는 적합인증서(또는 적합등록 필증) 왼쪽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영문을 포함한 16자리 숫자코드입니다.

5. 적합성평가 절차

5-12

전자민원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를 꼭 해야 하나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 이용에 대한 동의는 선택사항으로, 동의를 할 경우 사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5-13

파생모델이 있는 제품의 경우, 파생모델을 묶어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파생모델의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구조 및 부가적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5-14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의 내장구성품을 적합등록하려고 합니다.
추가 시험없이 적합등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적합등록을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은 지정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의 구성품임을 확인받아 추가 시험없이 적합등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13호) 제8조제4항

6.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

FAQ

6-1

외국의 인증(CE, FCC 인증 등)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나요?

외국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상호인정협정(MRA) 체결(미국, 캐나다, 베트남, 칠레)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EU, 영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승인(MRA 체결 국가)을 받은 해당 국가 내 시험기관에서 국내 기술기준에 따라 시험해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국내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6-2

MRA, FTA 관련 외국에 지정한 시험기관 현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외국에 지정한 시험기관현황은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 홈페이지에서 화면 중앙 "업무안내"를 클릭하시고 홈페이지 좌측 "적합성평가제도 - MRA안내"를 클릭하시면 화면 하단부의 "한국에서 승인한 외국시험기관" 또는 "EU에서 통보한 EU내 시험기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MRA안내 화면]



국립전파연구원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한국 전파 혁신의 원천

정보공개 민원·장마 업무안내 협력소식 연구원소개

업무안내

적합성평가 제도

- 적합성평가 세도 개요
- 전파 적합성평가 규정
- 적합성평가 현장 응선
- 무선통신장치 신기록제 현안
- 시장시작기준 개요
- MRA 안내**
- 적합성평가 제도 FAQ

방송통신기술기준

국가표준

전자파 품수율

전자파 적합 표준시험

▶ 업무안내 > 적합성평가 제도 > MRA 안내

MRA 안내

○ 전파인증 관련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대한 주제입니다?

■ 국내 제조사 등이 단체 혹은 그룹 회사에 수출해 주고 있는 경우 국내 수입국에서 시장성평과와 간이인증을 받아야 유통이 가능하나, 최소인증면제로 해결한 국가의 경우, 수출세계에 대해서도 이미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국의 동반인 기관과 협력하여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해당 국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

● 국내 국가 간 상호인정 협정 수준의 고지 하는 내용은 성과 기준과 기준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국내 수입국에서 인증서를 받을 때는 1년에 한 번,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은 5년에 기초로 2년마다 시행하고 전송하고 2년마다 점검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상호인정 협정은 단체별·전체별 적합성 평가 및 신뢰 평가

(1) 과정별로 적용되는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필요로 인정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와 협정하여 “설정된 평가”이며 “나라”를 해결할 수 있다.

(2) 상호인정 협정에 설정된 평가 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확보한 시장은 해당 협정으로 상환된다.

(3) 적합기술성 보조 전문기관은 상호인정 협정을 사용할 때에는 그 특성을 고려한다.

○ 우리나라와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어디인가?

■ 일부는 2001년부터 국가 간 수출·입 총량 등을 고려하여 현재 캐나다, 미국, 브루나이, 유럽, EU, 영국 6개국과 1년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고, 2017년 12월에는 캐나다와 2018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201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정체결국	미국	캐나다	EU	영국	브루나이	칠레
접수연제	1년제	1년제	1년제	1년제	2년제	1년제
제출일자	76.3일	70.0일(2018) 17.12일(2019)	18.30일	73.0일	76.1일	70.0일

6.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

6-3

한-EU FTA협정에 따라 "EU 시험기관 인증서를 보유한 제품을 국내 수입시 EU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국내 KC 인증이 가능한가요?

한-EU FTA 협정문은 원산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산지 규정에 따라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제조사와 제조국은 모두 EU내에 있어야 합니다. EU에서 통보한 EU내에 있는 시험기관에서만 시험을 수행하되, 제품 시험항목 중 전자파적합성(EMC)만 한-EU 상호인정 대상이 되며 유·무선 등 다른 시험 항목은 국내에 있는 시험기관에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위 절차에 따른 시험 결과는 국내 주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검토하여 KC인증을 발급합니다.

【관련 규정】 한-EU FTA 부속서 2-나 ((전자제품), 2011.7.1)

6-4

MRA 상대국 지정기관(예시: FCC, IC 등)의 표준화된 기술기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전자파 및 유무선 통신 분야는 미국 내 전파환경의 보호 및 주파수 스펙트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미연방통신위원회(FCC)를 통해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http://www.fcc.gov>의 Quick Links에서 FCC 규정 등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증 및 주파수 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조직은 OET (Office of Engineering & Technology)이며, FCC 기술기준은 아래의 웹 주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http://www.fcc.gov/oet/ea/eameasurements.html>
- OET 홈페이지 좌측 화면에 있는 Knowledge Database자료

ISED(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에 의한 캐나다 시험기관 지정 및 인증 절차, 기술기준은 아래의 웹주소에 찾을 수 있습니다.

- <http://www.ic.gc.ca/eic/site/smt-gst.nsf/eng/sf01750>

베트남 정보통신부(MIC)의 인증제도 및 기술기준은 아래의 웹주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http://mic.gov.vn>
- [http://english.mic.gov.vn/mra/pages/chuyenmuc/1312/Mutual-Recognition-Agreements-\(MRAs\).html](http://english.mic.gov.vn/mra/pages/chuyenmuc/1312/Mutual-Recognition-Agreements-(MRAs).html)

7. 기타

7-1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및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 기자재등을 제조, 판매, 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시험·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련 규정】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7-2

적합성평가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적합성평가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으로 구분됩니다.

적합인증은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 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받는 적합성평가를 말합니다.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은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등록하는 적합성평가를 말합니다.

자기시험 적합등록은 측정·검사용, 산업·과학용 등 기자재의 특성·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기자재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등록하는 적합성평가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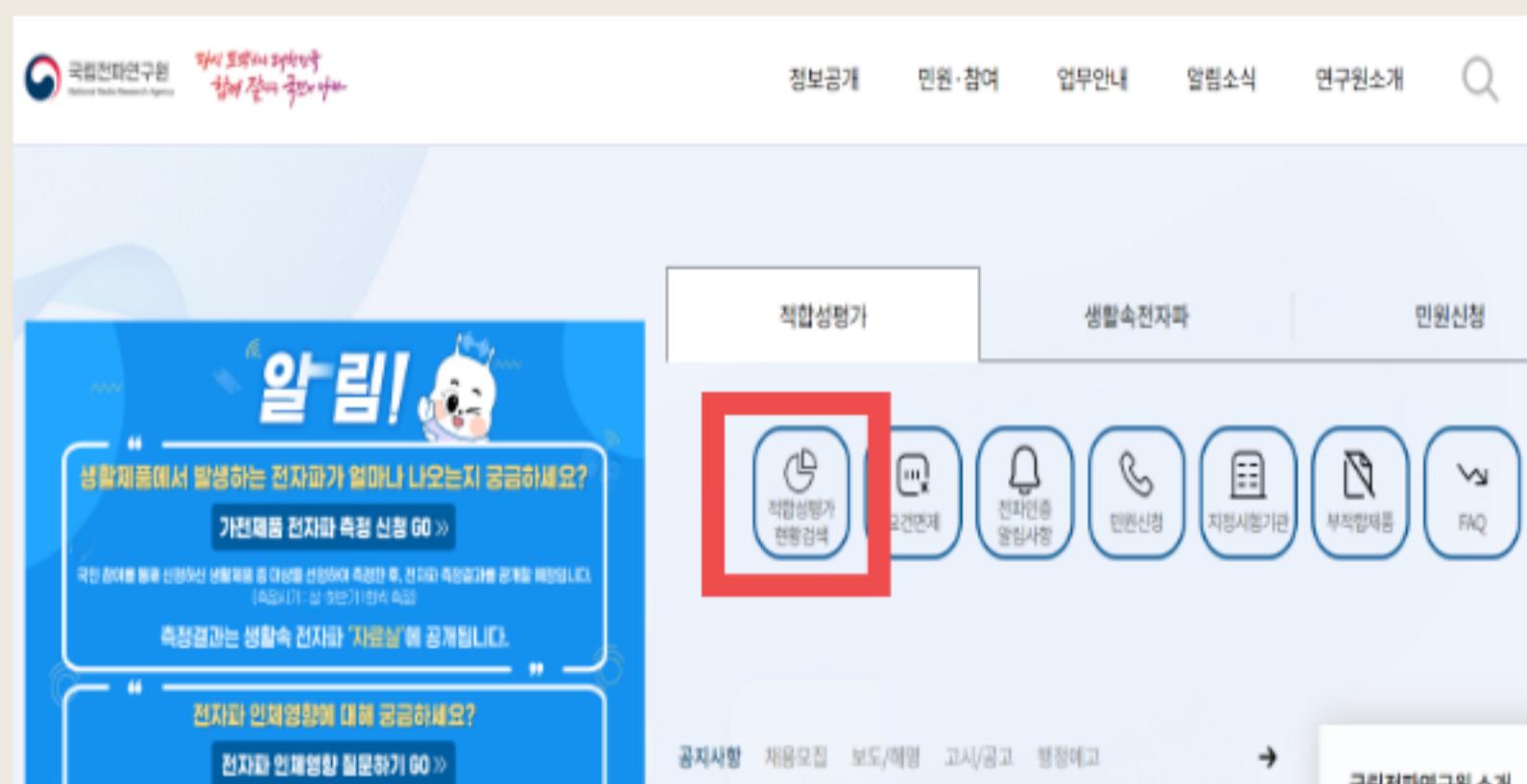
잠정인증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적합성평가를 말합니다.

【관련 규정】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7조의6

7-3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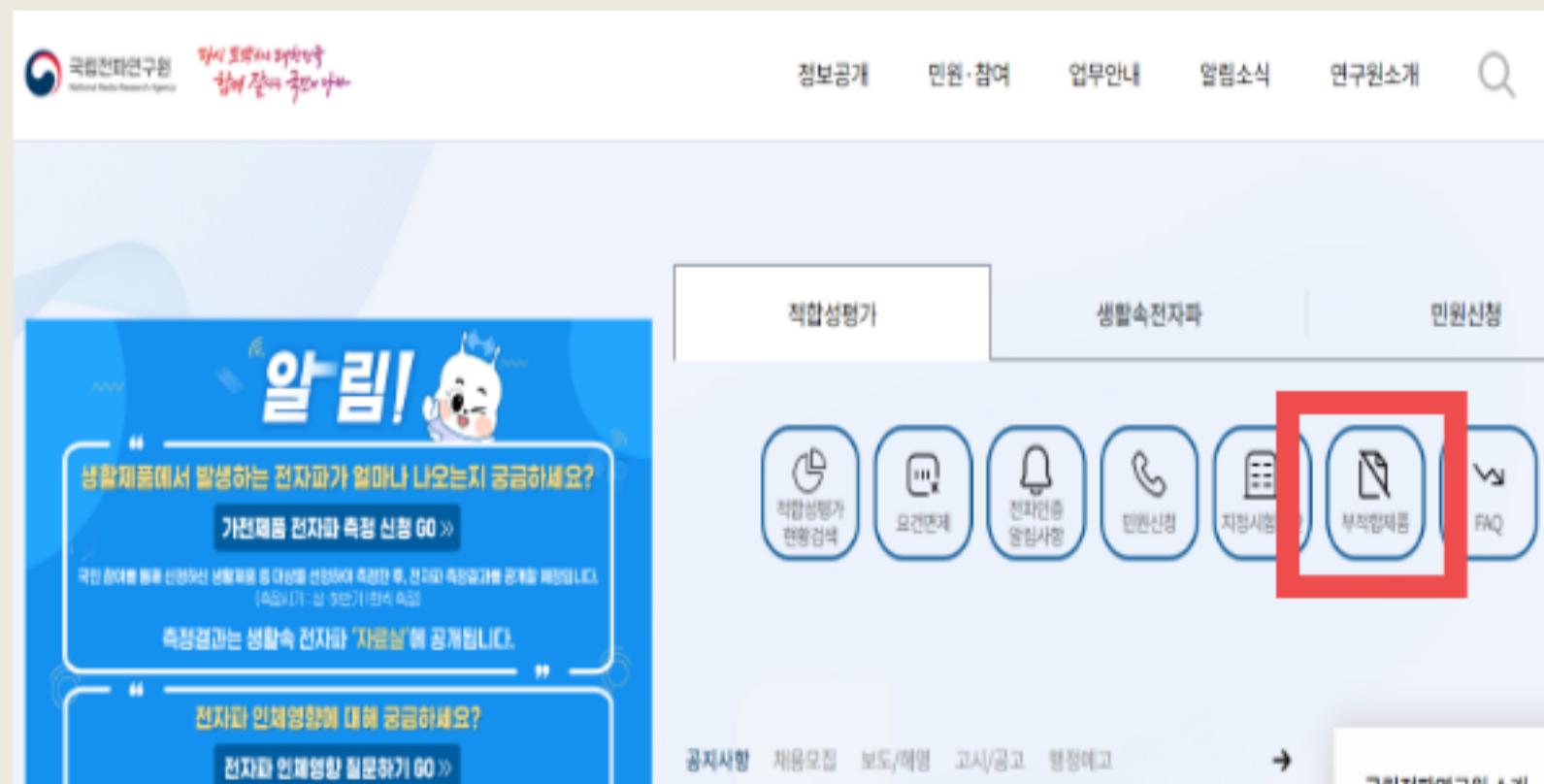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www.rra.go.kr)의 화면 중앙의 "적합성평가현황검색" 배너를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4

적합성평가 기준 부적합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제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 중 기술기준 부적합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은 국립전파 연구원 홈페이지(www.rra.go.kr) 화면 중앙 "부적합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5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법령, 고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법령 및 고시는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고시가 있습니다.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법령, 고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 ②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 홈페이지-알림소식-법령정보에서 확인

The screenshot shows the 'Law and Regulation' section of the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s website. The left sidebar has a red box around the 'Law and Regulation' link under the 'Alert News' category. The main content area shows tables for 'Telecommunications Law and Regulations' and 'Telecommunications Implementation Rules'. Each table lists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with a 'View Details' button next to each en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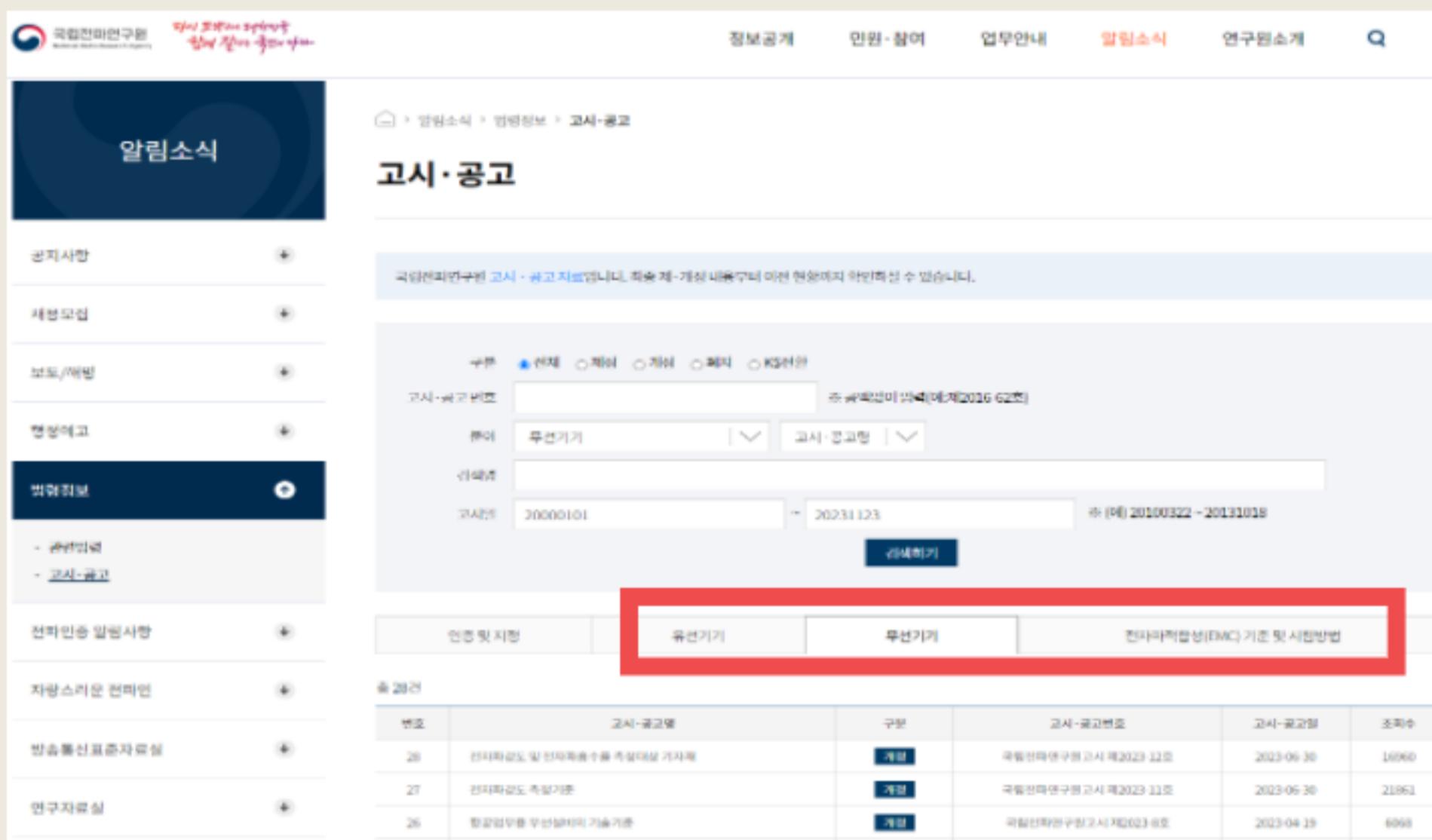
The screenshot shows the 'Notice and Public Notice' section of the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s website. The left sidebar has a red box around the 'Notice and Public Notice' link under the 'Law and Regulation' category.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 search form for notices, with 'Notice' selected as the type. Below the search form is a table titled 'List of Notices' showing various notices from 2013 to 2023, including titles like 'Noti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Law' and 'Noti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Broadcast Equipment Law'.

7. 기타

7-6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기준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www.rra.go.kr)의 화면 중앙 “법령정보”에서 전자파적합성, 무선기기, 유선기기에 대한 기술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7

적합성평가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합성평가를 해지하거나 관계기관이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기 전에는 적합성평가는 유효합니다.

7-8

자기시험 적합등록 기자재의 시험성적서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지정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제조사의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자기시험 적합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KC 전파인증 업무별 연락처]

KC 전파인증 제도

대상 제품 문의, 인증(등록) 신청,
면제, 인증(등록) 변경

사후관리
(기술기준준수, 전파인증표시의무준수)

미인증 제품 조사·단속

061-338-4711~4715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031-644-7400
(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

031-644-7400
(전파시험인증센터 사후관리과)

080-700-0074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